소　　장

원　고　전 민 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2, 종로빌딩 3층

연락처: 02-737-0717

피　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하 '방심위')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목동, 한국방송회관) (우편번호 07995)

담당연락처: 02-3219-5226 (대표: 02-3219-51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재심의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원고가 제기한 2019. 03. 22. 민원제기에 대한 피고의 2019. 07. 02. 권고결정 및 원고의 2019. 07. 18. 재심의신청에 관한 피고의 2019. 08. 23. 거부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사건의 경위

가. 사실관계

<도올아인 오방간다>[1]는 KBS-1TV에서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2019년 1월에 특별 편성한 프로그램으로 도올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와 배우 유아인이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도올 김용옥은 2019년 3월 16일(토) 20:00-21:00 가족시청시간대 및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2]에 방송된 KBS-1TV <도올아인 오방간다> 제11회에서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해방과 신탁통치>를 주제로 강연을 하던 중, 건국대통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망언을 하였습니다.

[동영상 0:05:11-]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해방됐지만 해방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미국이었다. 소련은 김일성을 데려왔고, 미국은 하버드 석사학위에 프린스턴대학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던 이승만을 데려왔다."** [동영상 0:09:20-] **"김일성과 이승만은 소련과 미국이 한반도를 분할 통치하기 위해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퍼핏(puppet), 괴뢰에요! 자기말 잘 듣는 꼭두각시라는 뜻이지요."** (도올 김용옥의 발언 다음에 자막으로 괴뢰(puppet)를 부연 설명하여, '형식상으로는 독립적인 듯 하나 실질적으로 다른 단체에 종속되어 그의 말을 따르는 단체나 정권' '남의 지시에 따라 주체성없이 움직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는 장면이 나온다.) [동영상 0:09:53-] 한 방청객이 "이승만이 부정선거를 하면서 대통령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묘지에 안장돼서 편안히 있다는 사실"에 대해 도올 김용옥과 진행자 유아인의 의견을 묻자, 유아인은 도올 김용옥의 책에 쓰여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거룩한 사기꾼(a holy imposter)'**이라는 문구가

1) VOD 동영상 파일 (갑 제1호증)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조 제5호. "가족시청시간대"라 함은 19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하며, 토·공휴일의 경우 18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제6호.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라 함은 7시부터 9시까지, 13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공휴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방학기간 동안에는 7시부터 22시까지를 말한다. 단, 유료채널의 경우에는 18시에서 22시까지를 말한다.

인상적이라며, 도올 김용옥의 부가설명을 부탁한다. 그러자 김용옥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이승만은 사태를 파악하고 장악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 능력이 나쁜 방향으로 개발된 사람으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만 쓴 불행한 인간으로, 한국 역사상 지식인의 표상으로서 끊임없는 반성을 하게 만드는 인물이다. 당연히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 "이승만은 원칙없이 움직여요. 자기에게 유리한 진로만을 택하여 어딜 가나 분열을 일으키고, 내가 이승만에 대해 엄청 자세하게 조사를 해봐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남기지 못했고, 이승만 대통령 밑에서 우리는 신음하면서 자유당 시절을 겪었는데, 4.19혁명으로 그를 내쫓았어요. 사실은 역사에서 이미 그는 파내어진 인물입니다."** (도올 김용옥이 발언할 때, 진행자 유아인은 묘지에서 꼭 파내야만 하느냐는 말을 질문식으로 중간중간 반복하고, 모든 방청객이 웃으며 반응한다. 거부반응을 보이는 방청객이 한 명도 없다.) [동영상 0:39:41-] 도올 김용옥은 신탁통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소련이야말로 한국을 분할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미국이 분할 점령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소련은 한국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독립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신탁통치는 남북한이 하나된 '임시조선민주정부'를 세우기 위한 과도기적 방안으로, 찬성하면 '좋은 놈'으로 찬탁은 합리적 사유의 인간이며, 반대하면 '나쁜 놈'으로 반탁은 변통을 모르는 꼴통의 인간이다.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신탁통치에 찬성했으면 분단도 발생하지 않았다."**

나. 원고의 민원

원고는 2019. 03. 22. 피고 방심위에 도올 김용옥의 망언을 방송한 KBS 제재를 위해 유선상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해방과 신탁통치>를 주제로 도올 김용옥 교수가 건국대통령에 대하여 망언을 한 것을 KBS가 여과없이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다. 피고 방심위의 민원 처리결과

(1) 결정내용 : 권고결정 (2019. 07. 02.)

(2) 방심위 답변내용[3] :

<완전한 독립을 위하여, 해방과 신탁통치>를 주제로 해방 직후 이승만 초대 대통령에 대해 김용옥 교수가 강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소련이 여기를 분할 통치하기

3) 민원처리결과답변서 (갑 제2호증)

위해서 데려온 자기들의 일종의 puppet, 괴뢰에요 괴뢰", "한국역사에서 지식인의 표상으로서 끊임없는 반성을 하게끔 만드는 인물이다. 당연히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19혁명으로 그를 내쫓았어요. 사실은 역사에서 그는 이미 파내어진 인물입니다"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역사적 인물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비평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나 그 과정에서 국민 정서상 사자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여 일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사상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강연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점, 방청객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발언이라는 점과 역사해석 관점에서 소수자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 취지 등을 감안하여, 「방송법」제100조 제1항에 따라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를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명예훼손 금지), 제27조 제5호(품위 유지)

라. 원고의 이의(재심의)신청 내용 (2019. 07. 18.)

원고는 2019. 07. 18. 피고 방심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음과 같이 재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원인은 2019년 3월 22일 피고 방심위에 제기했던 KBS-1TV <도올아인 오방간다>의 민원처리에 관한 심의결정을 위와 같이 2019년 7월 2일 통보받았습니다. 이메일로 송부된 심의결정 <민원사항에 관한 처리결과> 및 심의위원회의 <2019년 제12차 방심위 정기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심의위원회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대로 심의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서 심의대상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적절한 제재조치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하 내용, 갑 제3호증 참조)[4]

4)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갑 제3호증)

마. 피고 방심위의 재심의 처리결과 내용[5] (2019. 08. 23.)

귀하께서 제기하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도올아인 오방간다> (3.16)에 대해 '권고'결정을 의결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청하는 것으로, - 위원회는 제39차 방송소위(5.23.), 제44차 방송소위(6.13.)를 거쳐 제12차 전체회의(6.24.)에서 방송내용에 대해 심의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의결한 것으로,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모두 검토한 결과 제20조(명예훼손 금지)제2항, 제27조(품위 유지)제5호의 적용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며, 민원인이 지적한 조항들은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거나, 고려하였지만 해당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지 않아 '적용규정'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 위원회는 제44차 방송소위에서 방송사로부터 의견진술을 청취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형식과 방송 취지 등에 감안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이미 심의를 완료한 사안으로, 재심의를 할 사정의 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방심위 권고결정 및 기각결정의 위법부당성

가. 도올 김용옥의 망언은 위법한 범죄행위입니다.

(1)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미국의 괴뢰'라는 망언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로서 사자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해방 직후 미군정은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을 막았고, 에버레디(Ever-ready) 작전으로 제거하려고까지 하였을 정도로 대한민국의 이승만 건국대통령은 국익을 위해 자주적인 외교를 펼친 분입니다.[6] 신탁통치에 반대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의 세계사적 성공은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난 것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혜택을 오늘날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신탁통치 반대와 철저한 반공노선, 자유민주주의체제 국가 선택이 옳았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5) 재심의신천에 대한 거부처분답변서 (갑 제4호증)
6)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진실, 김현태, 현경사회복지회, 범아출판주식회사, 2018.7.30. 106-108면 (갑 제5호증)

(2) '해방의 주체는 우리가 아닌 미국이었다'는 내용은 역사적 진실을 제대로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미국의 승리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음은 사실입니다. 이승만은 그의 프린스턴대 스승이자 미국 제28대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의 원칙에 힘입어 3.1운동을 주도했고, 그 결과 임시정부를 수립해 임정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였음이 역사적 사실입니다.[7] 우리민족은 임시정부를 구성해 독립을 주체적으로 준비해왔고, 국제사회에 외교적 노력과 끊임없는 항일독립운동을 하여 해방에 자주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3) "소련이야말로 한국을 분할점령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미국이 분할 점령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소련은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독립시키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었다."는 도올의 발언은 한반도를 분할점령할 생각이 없는 소련과 한반도를 분할점령할 미국으로 대비시켜 역사적 사실을 곡해하는 망언입니다.

1945년 9월 20일, 북한에는 스탈린의 비밀지령에 의해 남한보다 먼저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1946년 1월 16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미소회담에서 미국측은 38선을 즉시 철폐하고 남북간의 자유로운 여행과 물품의 유통 및 단일한 통화를 사용하자고 제의했으나 소련측은 거부하였습니다.[8] 1946년 2월 8일, 소련은 북한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 남북 분단은 현실화되었습니다. 따라서 분할점령할 생각은 소련측이 가지고 있었고, 독립을 위해 노력한 것은 미국측이었습니다. 이 역사왜곡을 통하여 도올 김용옥은 김일성보다는 이승만에 대해 미국의 꼭두각시가 되어 조종을 당하는 퍼핏(puppet), 괴뢰라는 불명예스런 굴레를 씌우려했다는 고의성과 함께 허위의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4) "이승만은 부정선거로 인해 쫓겨났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묘지에 안장돼 있는 것"에 대해 김용옥은 "국립묘지에서 당연히 파내야 한다. 우리는

---

7) 갑 제6호증
1. [역사증언] 이승만의 밀서(密書)가 3.1운동 일으켰다 뉴데일리 2019. 02. 25.
2.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편집부, 동아일보사, 1988.01. 01. 123면
3. 승당 임영신의 나의 40년 투쟁사, 임영신, 민지사, 2008. 08. 20. 121-123면

8) 이인수, 2001,「대한민국의 건국」서울: 촛불, 79면 (갑 제7호증)

이 대통령 밑에서 신음하며 자유당 시절을 겪었고, 4.19혁명으로 그를 내쫓았다. 그는 역사에서 이미 파내어진 인물이다"는 망언은 고인의 명예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건국사와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당시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3.15부정선거는 부통령 선거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부정선거를 지시한 바가 없으며,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조차 전혀 몰랐습니다. 당시 85세의 고령으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승만 박사가 무엇이 아쉬워서 부정을 저질렀겠습니까? 부정선거의 발단은 당시 국회의장인 이기붕과 내무부장관 최인규에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대하여 발포를 건의하는 계엄사령관에게 오히려 하야를 결정함으로써 국민을 끝까지 사랑한 건국의 아버지였습니다.[9] 자유당 시절에 신음하며 지낸 자들은 우리의 적인 공산주의자들과 남로당이었습니다. 공산국가가 될 운명에 처해있던 한반도가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위대한 통찰력을 가진 반공주의자로 하여금 자유대한을 태동하게 하였습니다.

자유의 혜택에 무임승차하는 주제에 함부로 건국의 아버지를 음해하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모가 잘못이 있다고 하여도 무덤에서 파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초대 건국대통령으로서 쌓은 업적과 공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도 없이 우리 5천년 민족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을 이루신 분을 역사에서 말살시키겠다는 선동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배은망덕이자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민족의 감정을 훼손하였고,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였습니다. 심지어 북한과 같은 무도한 정권에서조차 민족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면, 최고형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5) "전 국민이 일치단결해 신탁통치에 찬성했으면 분단도 없었을 것"이라는 망언은 이승만이 신탁통치에 반대하여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된 것처럼 누명을 씌우려는 음모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수립한 것을 두고 남한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권력욕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 분단이 고착화되었다는 주장으로 사실과 다릅니

9)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진실, 김현태, 현경사회복지회, 범아출판주식회사, 2018.7.30. 47-54면 (갑 제5호증)

다. 그러한 주장은 정읍발언의 배경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읍발언을 한 것은 북한지역이 이미 공산화된 상황에서 답도 나오지 않는 미소 공동회담의 합의만을 기다린 채, 정부를 수립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남한마저 공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우리나라가 또다시 소련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소련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승만은 정치적 생명을 무릅쓰고 정읍발언을 한 것입니다.

정읍 발언이후, 이승만은 두 차례 암살 미수까지 당했습니다. 수많은 비난을 받고 갖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공산주의와의 좌우합작을 절대 반대한 이유는 공산주의야 말로 반인륜적이고 반국가적이며 반기독교적인 사상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좌우합작이야말로 폴란드가 그랬던 것처럼 공산화로 가는 함정임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10] 북한은 소련의 괴뢰국으로서 이미 적화야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은 남한 만이라도 정부를 세워 자유국가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종국에는 북한 동포를 구출하여 통일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승만은 권력욕 때문에 단독정부 수립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여 이승만을 음해하려는 것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을 추종하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단의 원인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의 참가문제를 둘러싸고 미소 양국간 의견대립이 일어난데 있습니다. 소련 측은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임시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측은 모든 정당, 사회단체를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보다도 먼저 38선을 철폐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련은 겉으로는 한반도에 남북통일 임시정부 수립과 신탁통치 실행을 위한 미소 공동회담에 참여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에 완전한 공산정권 수립과 남한에 대한 무력침공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벌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교활한 소련과 협의해서 한반도에 남북통일 임시정부를 세우려는 미국의 좌우합작 정책 때문에 해방 후 3년이 지나도록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될 수 없었습니다. 소련 측의 주장대로 찬탁하는 단체, 정당으로 임시정부를 구성했다면 당시 우

10)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김재동, 복의근원, 2018. 7. 5. 83-89면 (갑 제8호증)

리나라는 공산주의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소련측 주장대로 찬탁을 하지 않고 반탁을 하여 남한 만이라도 자유민주 공화국을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11]

1945년 10월 13일 김일성 일당은 평양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설치했습니다. 김일성은 그의 추종세력들과 함께 공산당 조직을 꾸준히 강화하여 소련군과 함께 1945년 12월 17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북조선공산당으로 격상하여 공산당정부조직을 위한 기반을 조성시켰습니다. 1946년 2월 8일 소련은 북조선공산당 위원장인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임시정부에 해당하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스탈린 지령에 따른 친소 단독정권의 수립이었습니다. 소련의 의도는 북쪽에 먼저 친소정권을 수립하고 이어 한반도 전역을 공산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12]

도올 김용옥은 소련측 주장대로 하여 분단없이 공산주의국가가 되는 것이 좋은지,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국가를 세웠던 것이 나은지를 판단할 이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승만의 올바른 판단이 5천만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소련을 자기 조국으로 생각하는 반역세력이고 파괴자들이므로, 국가 건설 과정에서 함께 갈 수 없다고 세계최초로 선언한 자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공산주의는 양의 가죽을 쓰고 세계정복을 꿈꾸는 소련의 앞잡이라는 정체를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최초로 간파한 분이십니다.

(6) 도올 김용옥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욕설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나아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건국대통령을 근거도 없이 미국의 괴뢰라고 하는 허위사실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유포하여 음해하였습니다.[13] '무덤에서 파내야 한다'는 인간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최대의 모욕을 범하였습니다.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신 부모를 욕하면 가장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 민족은 알고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를 모욕한 행위도 최대의 악을 범한 것입니다. 자유민주체제를

11)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김재동, 복의근원, 2018. 7. 5. 83-89면 (갑 제8호증)
12)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진실, 김현태, 현경사회복지회, 범아출판주식회사, 2018.7.30. 19-21면 (갑 제5호증)
13) 언론보도 신문기사 (갑 제9호증)

수립한 이승만 대통령을 폄훼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격을 실추시키고 나아가 북한체재를 상대적으로 선전 선동하는 반국가적 반역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많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정신적 피해를 주었습니다.[14]

역사를 왜곡하고 건국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망언은 형사처벌의 대상인 범죄행위[15] 이지 표현의 자유로 보호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비방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하고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훼손하였습니다. 망언으로 국민을 혹세무민함으로써 국민정신을 노략질하였습니다. 국민정신을 병들게 하는 망언이었습니다. 남북대치상황에서 대한민국을 더 빠르게 침몰시키는 국가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국가적 범죄행위로서 반역죄에 해당합니다.

나. KBS는 도올 김용옥의 형사공범인 동시에 공동 불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공적매체의 본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올 김용옥이 건국대통령을 비난하고 조롱한 녹화방송에 대해 충분히 논란의 소지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명시된 KBS 자체 심의에서 거르지도 않고, 제8조에 명시된 가족시청시간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그대로 방송하였습니다. 지상파방송은 사회통합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나오는 조항들에서 구체적으로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며, 사회통합 실현을 저해하였습니다(동규정 제8조①), KBS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방송은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모독하는 발언에 방청석 전원이 한결 같이 박수를 보냄[16]으로써 좌파성향의 방청인만을 초청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으며 이와 같이 여론을 왜곡형성 하려고까지 함으로써 동규정 제9조 제2항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14) 언론보도 신문기사 (갑 제9호증)
15) 현행법상 사자명예훼손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행정벌 등이 관련됨. 역사왜곡에 관하여는 5.18 역사왜곡의 정당성을 떠나 5.18 역사왜곡 특별법상 역사왜곡자에 대한 징역형 부과규정과 연관시켜 볼 수 있고, 본 사안은 5.18 역사왜곡보다 더 심대한 법익을 해하고 있다.
16) VOD 파일 (갑 제1호증)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방송의 객관성(동규정 제14조), 윤리성(동규정 제25조), 방송언어(동규정 제51조)규정 등을 모두 전면적으로 위반했습니다.

다. 피고 방심위는 위법한 결정을 하였습니다.

KBS의 도올 김용옥이 방송에서 했던 망언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여러 조항들을 위반하였음을 검토하지 않은 채,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2항, 제27조(품위유지) 제5호만을 적용하여 제재의 수위도 낮추어 '권고'를 의결하였습니다.

(1) 김재영 위원은 심의규정을 다수 위반한 발언에 대하여 '합리적 추론에 의한 역사적 견해를 표명했다'고 도올 김용옥의 망언을 옹호하였습니다. 합리적 추론에 의한 역사적 견해를 왜곡하였음을 지적하고 정정보도 등 상응하는 처분을 구하는 의견표명을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위법이 있습니다.

(2) 이소영 위원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된 사실의 적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분이라고 '의견제시'를 하며'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도올의 망언은 이승만과 유족의 명예훼손과 직접 관련이 될 뿐만 아니라 역사왜곡으로 혹세무민한 행위입니다. 국민정신을 병들게 함으로써 국가를 흔드는 반역행위 임에도 도올 김용옥의 망언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조차 않았습니다.

(3) 강상현 위원장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심의위원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각 조항들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해야 함에도, 회의록에서 해당되는 조항들을 제대로 검토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라. 피고 방심위는 위법한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 방심위가 원고에게 보낸 <민원사항에 관한 처리결과>에 의하면, '...(1) 일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에서 관련 심의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2) 사상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강연 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점, (3) 방청객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발언이라는 점과 (4) 역사해석 관점에서 소수자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 취지...'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방심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다수 조항들을 KBS가 명백히 위반한 사실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KBS와 도올 김용옥의 대변인 입장에서 변호하듯, 과격하고 편향적이며 역사를 왜곡한 망언의 의미를 희석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책임을 묻지 않는 심각한 오류를 자행했습니다. 피고 방심위가 제시한 답변서에 나온 의견이 옳지 않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의견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 이승만 건국대통령 유족이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절차가 진행 중이며, KBS의 공영노조에서 항의성명서[17]를 낸 것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모여 항의집회[18]를 열었는데, 무슨 근거로 다수의 시청자가 불쾌의 정도를 넘어 분노했던 사건을 '일부 시청자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축소하였는지, 피고 방심위의 불성실한 심의에 강력하게 항의하는 바입니다.

(2) '사상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강연형식의 프로그램이라는 점',
(3) '방청객의 질문에 답하는 발언이라는 점' 등의 형식이면 망언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러한 근거규정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한 형식들도 도올 김용옥의 망언 내용의 문제점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망언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상의 자유도, 강연형식의 프로그램도, 질문에 답하는 발언도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입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다고 하여 역사를 왜곡할 자유까지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역사왜곡은 범죄입니다. 강연형식의 프로그램에서도, 질문에 답하는 발언이라도 망언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는 '대담·프로그램 및 이와 유사한 형식을 사용한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 또는 희화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규정을 위반했음이 명확함에도 피고 심의위원들이 규

17) KBS 공영노조 성명서 2019.3.20. (갑 제9호증)
18) 이승만 매도, 강원도 재난방송 부실 '잇단 사고' KBS 규탄집회 10일 열린다. 2019.4.10. [미래한국] (갑 제10호증) 언론보도 신문기사 13

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심의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진실을 방송하도록 제재해야 할 피고가 해괴한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에서는 위법한 망언과 불성실한 직무집행에 대하여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4) '역사해석의 관점에서 소수자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 취지'라는 피고 방심위의 설명은 도올의 망언이 다수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피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즉 피고는 도올의 망언이 우리 사회의 통념에 어긋나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방송심의의 기본원칙인 사회통념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였음을 지적해야 함에도, 피고 방심위는 오히려 도올을 변호하는 모순에 빠졌습니다.

또한 피고 방심위는 도올 김용옥에게 질문하여, 소수자의 입장을 전하고자 한 취지라고 답변을 들었는지, 그런 도올의 답변도 없이 피고가 판단하였다면, 객관적 입장을 견지해야하는 심의기관의 역할을 망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수자의 입장을 전할 자유는 역사왜곡이 없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수자의 입장은 선이고 그것을 전하면 면책이 된다는 뜻입니까? 소수 입장을 전하는 자유가 존중되어야 한다면 그로 인해 피해입은 다수의 입장은 더욱더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언급이 있었어야 피고가 제대로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할을 유기한 피고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하였습니다.

공영방송에서는 사회통념을 전달해야 함에도 사실을 왜곡한 소수자의 입장만 여과없이 방송한 것에 대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잘못된 소수입장으로 다수 입장이 침해를 받은 것에 대해 상응하는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합니다.

(5) 피고 방심위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회의에 참석한 강성현 위원장, 이소영, 김재영, 허미숙 등 심의위원들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여타 해당 조항들의 위반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적용하지도 않은 채 심의에 임함으로써, 기본적인 심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6)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피고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19] **헌법의 핵심**에 해당하는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간주하는 피고의 사상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단체가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고 북한정권을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합니다. 방송의 공적책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이를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바지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 통제의 책임은 사법기관에 있음이 헌법의 규정입니다.

마.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당연히 적용해야 할 심의규정까지 제시했었습니다.[20] 그런데 피고는 심의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민원인이 지적한 조항들은 적용하기에 적절치 않거나, 고려하였지만 해당 규정을 위반한다고 판단하지 않아 '적용규정'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적용하지 않은 경우는 어떤 규정이 어떤 근거에서 적용이 적절치 않다는 것인지, 적용한 경우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였고 어떤 근거에서 도올의 망언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규정을 검토하여 적용하였다면, 제대로 된 처분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고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도올의 망언이 명백히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위반하지 않았다는 근거 제시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3. 결론

KBS는 <도올 아인 오방간다>에서 도올 김용옥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와 사자명예훼손을 사전 심의를 통해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여과없이 방송하여,

---

19) '독소조항' 논란 일던 방송심의 규정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삭제 [출처] 한겨레 문현숙 선임기자 2019. 9. 24. (갑 제9호증 14)

20)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3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6조, 7조, 8조, 9조, 13조, 14조, 25조, 33조, 51조)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하는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위반하였습니다. 피고는 국민이 관심을 갖는 내용을 심의함에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 6조, 7조, 8조, 9조, 13조, 14조, 20조, 27조, 25조, 33조, 51조 등을 명백히 위반함으로써 공적책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중징계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피고의 결정은 권고수준으로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함으로써 피고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오히려 적용하여야 할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고, 적용하였다고 하는 규정은 합리적 이유를 적시하지도 않았으며, 이유로 제시한 것은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역사왜곡은 대한민국 건국사를 오도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도올의 망언은 사자명예훼손 등 범법행위입니다. 일부 편향된 몰지각한 자들의 의도된 기획으로 유족과 국민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들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현저히 훼손하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실질적인 범죄에 해당합니다. 방송을 통한 역사왜곡의 폐해는 심각성과 광범위성을 특성으로 하며 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KBS에 대한 권고결정은 제재의 정도가 지극히 경미한 처분이므로 이는 사자의 명예와 유족 및 국민을 거듭 욕되게 하는 죄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고의 처분은 백번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역사왜곡 재발방지를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분을 하여 몰지각한 좌파성향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원고의 재심의 요청에 대한 피고의 기각결정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 법리오해 등의 사유가 있어서 재량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역시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원고와 이승만 대통령의 유족 그리고 우리 국민은 피고 방심위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회제공, 문제의 VOD 동영상 삭제, 관련 당사자에 대한 출연정지, 대국민 사과, 관계자 중징계 등 강력한 제제처분을 함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법원의 정의로운 심판을 통하여 유족과 국민의 상처가 치유되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이 영원할 수 있기를 5천만 국민과 해외동포 그리고 선조들과 함께 염원합니다. 본 재판부에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VOD 동영상 파일
1. 갑 제2호증 민원처리결과답변서
1. 갑 제3호증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갑 제4호증 재심의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답변서
1. 갑 제5호증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편한 진실, 김현태, 현경사회복지회, 범아출판주식회사, 2018. 07. 30.
1. 갑 제6호증 1-3
   1. [역사증언] 이승만의 밀서(密書)가 3.1운동 일으켰다 뉴데일리 2019. 02. 25.
   2.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편집부, 동아일보사, 1988. 01. 01.
   3. 승당 임영신의 나의 40년 투쟁사, 임영신, 민지사, 2008. 08. 20.
1. 갑 제7호증 이인수, 2001, 「대한민국의 건국」 서울: 촛불, 79면 참고문헌
1. 갑 제8호증 한국 근현대사 바로알기, 김재동, 복의근원, 2018. 07. 05.
1. 갑 제9호증 KBS 공영노조 성명서 2019. 03. 20.
1. 갑 제10호증의 1-15 언론보도 신문기사
   1. 도올 김용옥, KBS서 “이승만은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중앙일보 한영혜 기자] 2019.03.20.
   2. 도올 김용옥, “이승만은 ‘거룩한 사기꾼’...분열만 일으켰다”
      [서울신문 김유민 기자] 2019.03.20.
   3. 도올 김용옥 KBS서 “이승만은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조선일보 신동흔, 구본우 기자] 2019.03.20.
   4. 공영노조 “KBS, ‘이승만이 괴뢰? 도올’...퇴출 안하면 가만있지 않겠다”
      [스페셜경제 신교근 기자] 2019.03.21.
   5. 김용옥 “이승만은 괴뢰”...“공영방송이 특정 이념 흉기로”
      [문화일보 김구철 기자] 2019.03.21.
   6. 김용옥 “이승만,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발언 왜?
      [금강일보 강선영 기자] 2019.03.21.
   7. KBS 김제동에 이어 “이승만은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김용옥 파문

www.klac.or.kr KOR 대한법률구조공단

[미래한국 편집부] 2019.03.20.

8. 도올 김용옥, KBS서 “김일성·이승만 둘 다 괴뢰” 발언 물의
[헤럴드경제 송형근 기자] 2019.03.20.

9. 김용옥 “이승만 묘지서 파내야” 발언 논란...KBS ‘침묵’
[SBS 권태훈 기자] 2019.03.21.

10. 김용옥 “이승만 묘지서 파내야” 발언 논란...KBS “반론도 소개” 종합
[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2019.03.21.

11. KBS “국립묘지 이승만 파내라는 김용옥, 다양한 의견일뿐”
[뉴시스] 2019.03.21.

12. 김용옥, KBS서 “이승만은 美 괴뢰”...유족 “법적 대응”
[TV조선 황정민 기자] 2019.03.21.

13. 이승만 매도, 강원도 재난방송 부실 ‘잇단 사고’ KBS 규탄집회 10일 열린다
[미래한국] 2019.04.08.

14. ‘독소조항’ 논란 일던 방송심의 규정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삭제
[한겨레 문현숙 선임기자] 2019.09.24.

15. 여야3당, ‘518 특별법 개정안’발의...관련 허위사실 유포시 최대 징역 7년
[투데이신문 남정호기자] 2019.02.22.

첨 부 서 류

1. 위 입증서류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19. 11. 15.

원 고 전 민 정 (인)

서 울 행 정 법 원 귀 중